

제826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산새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
- 심 사 일 : 2013. 8. 16.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87,494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90일
 - 사업규모 :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일원, 45,756.2㎡
 -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『산새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』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도로, 공공시설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[용역비 조정 : 87,494천원 → 67,419천원 (감20,075천원, 용역비 대비 -22.94%)] [심사내역] ○ 기본설계가 없는 실시설계 통합발주 설계요율 적용 - 설계요율 : $3.45 \times 1.4 = 4.83\% \rightarrow 4.22\%$ 적용 ※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(‘11. 9. 5) ○ 직접경비 조정 - 측량비 제외 : 5,080천원 → 0 (서울시 수치지형도 활용) - 보고서, 협의도서 비용제외 : -3,000천원 -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제외 : -1,500천원 ○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: 800천원 → 400천원 ※ 건기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참조(기본설계분 감액)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자면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적정